

2024학년도 진안마이꿈유치원운영위원회 연수 자료

(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)

(일시) 2024. 4. 15(월) 15:30~

(장소) 우리유치원 1층 나눔터

(강사) 행정실장 허동원

(대상) 운영위원 5명

1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

가. 학교운영 참여권

-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즉, 학교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(公的)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
나. 중요사항 심의·자문권

- 학교운영위원들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할 권리가 있다.
-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,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.

다. 보고 요구권

-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.
 - 1)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심의·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
 - 2)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)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

라. 시정명령 신청권

-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, 심의·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(조례 제10조의2)

2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

가. 회의 참여의 의무

-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나.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.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
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.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 - 학부모위원 :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
 - 교원위원 : 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
 - 지역위원 :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
- 학부모위원, 지역위원,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3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,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)

가. 위원의 제척(除斥)
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 -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

경우

-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나. 위원의 기피(忌避)

-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,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다. 위원의 회피(回避)

-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